



보도	2022.11.4.(금) 조간	배포	2022.11.3.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양진호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문선기	(02-3145-7065)
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	박창옥	(02-3705-5211)
		담당자	부 장	이광진	(02-3705-5290)

금감원, 은행권과 함께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마련

- 국내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대폭 확대('22.3말 대비 + 374명, 70.7%↑)
-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절반 수준으로 축소(22.3말 대비 △2.844명, 47.1%↓)

I. 개요

- □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,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(7.26일~10.18일)하여,
 -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,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- □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**내부통제 실패**와 이로 인한 **거액 금융사고**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,
 - 금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**최소주의·형식주의***에서 **탈피**하고, **내부통제**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 - * (최소주의 ; minimalism) 법규상 내부통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양만 구축 (형식주의 ; formalism) 내부통제 절차를 본래 취지금융시고 예방 등를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운영

〈 혁신방안 핵심기조 〉

- ① (내부통제 인프라 혁신) ^①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, ^②장기근무자 감축 등 구체적 목표 설정 → 내부통제 문화의 기틀 마련
- ② (내부통제 실질화) 명령휴가, 직무분리 등 법상 사고예방조치 운영기준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재설계 → 목적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추진
- ③ (내부통제 상시화) 준법감시부서 기능(상시감시, 자점감사 점검 등) 강화, 취약 프로세스 지속 개선 → 내부통제를 일상 업무의 필수 과정으로 자리매김

Ⅱ.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주요 내용

한눈에 보는 혁신방안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준법감시부서

최소기준 설정 전 임직원의 0.8% 이상 (향후 5년간 단계적추진)

인력·전문성

'22.3말 529명 (0.48%) 전문인력 비중 10% '27말

903명 (0.8%) 전문인력 비중 20%

5년간

+374명 $(70.7\%\uparrow)$

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제한

순환근무 대상의 5% 이내로 축소 (25년말)

mmmmmmmmm

'22.3말 6.043명(8.2%)

manana

> '25말 3.199명(5.0%)

3년간

Δ2.844명 $(47.1\% \downarrow)$

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

준법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의무화 ('25.1.1.선임 이후)

금융기관 10년 이상 등

현재



'25.1.1. 이후 선임시

준법감시인 전문성 제고

②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

- 명령휴가
- 직무분리
- 내부고발자
- 사고예방대책



 \square





내규











제도 취지에 부한한 시스템 구축

운영

추진 **国 从立**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

- 11 비밀번호 공유·유출
- ② 채권단 공동자금 횡령
- ③ 자금인출 통제 부실
- 4 수기문서 조작







대형 금융사고 재발방지

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4

- 이상거래상시감시
- 자점감사 점검









내부통제와 일상업무 연계

가.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

1 준법감시부서 인력·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

가. 현황

- □ 법규 상 준법감시부서에 **충분한 경험과 능력**를 갖춘 **적절한 수의 인력을**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**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부족한 수준**
 - * '22.3말 기준 전체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비중은 0.48%로 최소 필요인력(추정) 비율인 0.80%에 못미치고,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.7% 수준에 불과
- □ 준법감시부서 인력・전문성 부족 → 준법감시 업무의 양적・질적 수준 저하 → 내부통제 준수 문화 약화 → 금융사고 지속의 악순환 유발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①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
 - 준법감시부서 인력*은 총 임직원의 0.8%** & 15명 이상 의무화
 - * 준법감시인 산하 부서 인력으로 하되,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,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
 - ** 은행 직무실적 자료 바탕 추정 최소 필요인력 비중, '22.3월말 수준(0.48%)의 약 1.5배
 - 소규모 은행(총직원 1,500명 이하)은 최소비율(1.0%) 및 인력(8명) 차등 적용

② 전문인력 확보기준 구체화

-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**전문인력*** 비중 **20% 이상**** 의무화
 - * ①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, ② 변호사, 회계사, CFA, FRM, 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 (해외 자격증 포함) 보유자, ③ 이 외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
 - ** '22.3말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(9.7%)의 2배 수준
- **주요 6개 분야**(여신, 외환, 파생, 리스크, IT, 회계)는 **최소 1명 이상** 확보 (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 최소 1명 이상)

다. 기타

- □ 상기 의무비율 등은 '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
 -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

2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

□ (현황)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하여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저하 우려

□ (개선) 준법감시인 자격요건*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**(2년 이상)을 추가 *금융경력자 자격요건으로 선임 시, ** 준법, 감사, 위험관리, 회계, 법무, 자금세탁

□ (기타) '25.1.1일 이후 선임 시부터 적용

3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

가. 현황

- □ 부서이동(3년~5년), 직무순환(1년~2년) 기준이 있으나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도 부재*
 - * 통상 부서장이 요청한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한 구조이며 장기근무 승인 시 심사요건도 부재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□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 실시
 - **장기근무자***는 **순환근무 대상** 직원 중 5%**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
 - * 동일 영업점 3년,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으로, 이중 순환근무 적용배제 대상(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·실물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지원부서 직원 등) 제외
 - ** '22.3월말 시중은행 수준(11.4%)의 약 1/2
- ②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
 -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
 - ② 장기근무 승인시 **장기근무 불가피성**, 채무·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* 심사 의무화
 - * 채무·투자현황 등 확인이 곤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은행장 승인으로 장기근무 가능
 - 3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, 최대 2회까지만 가능

다. <u>기타</u>

□ 관리비율 준수의무 등은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'25년 말부터 시행

나.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

1 명령휴가 제도

용어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 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

가. 현황

- □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제외하는 등 명령휴가 대상이 협소*하고, 대체 수단(일반휴가, 교육파견 시 점검 등) 활용 비중이 높아 강제력** 및 실효성 저조
 - * 대부분 은행이 특정직무(본점: 유가증권 투자, 트레이딩 등, 영업점: 출납, PB 등) 담당자로 한정
 - ** 명령휴가 대상자는 전체직원의 46.4%이며, 이 중 강제 명령휴가 실시 비중은 29.8%에 불과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Ⅱ 명령휴가 대상자 대폭 확대
 -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*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,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
 - * (영업점) 출납, PB, RM 등, (본점) 자산 운용 담당, 기업구조조정 및 IB 자금관리 담당 등

② 명령휴가 강제력 제고

- 위험직무자,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(최소 연 1회, 회당 1~3영업일이상) 의무화
- 명령휴가의 **불시성 제고**를 위해 **시스템 등록시간 제한*** 설정, 명령자의 **비밀준수 의무** 명문화
 - *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~당일 오전 9시 이전 시스템 입력, 대상자 업무 종료 시 통보 등
- ③ 명령휴가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
 - **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**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

2

직무분리 제도 용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

가 현황

□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거래 판단기준이 미비하고, 이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여 사고예방 효과 저하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□ 직무분리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
 - 거액 자금·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분리하도록 하고,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
- ②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
 - 직무분리 대상 업무 **등록·관리 시스템을 구축**하고 직무분리 대상 **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**을 체계적으로 **관리**
- ③ 직무분리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
 - o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직무분리 실시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

※ 직무분리 대상 주요 업무(예시)

- 영업점 등 시재관리 업무
 - 모출납, 출납담당책임자, 금고당번책임자 (외화 포함)/ ATM담당자, 금고당번 책임자/ 내금고 관리자, 외금고 관리자
- ② 은행명의통장 거래 : 통장 관리자, 인감 관리자
- ③ CD 영업 : 영업담당자, 발행·교부 담당자, 미발행증서 보관담당자
- ▲ 보호예수·보관어음 : 업무담당자, 보관담당자
- **⑤ 대출업무** : **대출**담당자, **보험판매**담당자, **감정평가**담당자
- 6 기업 구조조정 자금, IB 자금(PF, 투자금융 등) 관리 업무 - 업무 담당자, 통장 관리자, 인감 관리자, 자금결제 담당자
- 유가증권 거래 : 업무 담당자, 보관 관리자, 자금결제 담당자
- **③ 중요인장관리자**, 법인인감증명서 관리자
- ② 중요용지: 업무담당자, **보관**담당자
- **⑩ 전산개발: 개발**담당자, **운영**담당자
- 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은행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거래

3

내부고발자 제도 용어 내부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준법조직 등에 신고하는 제도

가. 현황

- □ 내부고발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*으로 운영
 - * '21년 기준 20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내부자 신고실적이 전무, 포상금 지급 실적은 1건에 불과
 -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·징계실적도 없는 등 운영 미흡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①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
 - 이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 삭제,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 의무화
- 2 내부고발 대상행위 확대
 - **주요 사고예방조치 미이행·소홀** 및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**내규** 불비사항을 기존 고발대상 행위(범죄혐의, 상사부당지시 등)에 추가
 - 고발 유형* 구분 및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 의무화
 - * ① 기발생 금융사고 조기 인지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
 - ② 금융사고가 실제화되지 않았으나, 내부통제기준 절차 위반에 대한 선제적 고발
 - ③ 내규·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제보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

③ 고발의무 위반시 조치 강화

- **사고금액 3억원 이상** 금전사고에 대하여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의무화 및 제재
 - * 다만, 내부고발 의무 위반자가 사고조사 시 실체 파악 및 손실 회복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제재 시 참작 가능

4

사고예방대책 마련 은행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임직원 사고방지 대책, 자점감사 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

<u>가. 현</u>황

- □ 모든 은행이 내규로 '사고예방대책'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상 원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*한 수준으로 실효성 미흡
 - * 일부 세부 예방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나 영업점 창구 업무(수신, 여신, 외환, 방카슈랑스 등)에 한정하고 있으며 본점 부서 업무 관련은 거의 없음
- ☐ 부점별 주요 사고예방활동·점검사항의 전파·관리 미흡, 사고예방을 위한 직급별 역할과 책임(R&R) 불분명 등으로 내부통제 준수문화 확산 미흡

- □ 사고예방대책 대상 부점 확대
 -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*도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* (예) 기업구조조정, IB, 유가증권투자, 국제금융, 자금 등
- 2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·구체화
 - (임원)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
 - (부점장)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 책임
 - (임직원) 수행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
- ③ 사고예방대책 활용도 제고
 - 직급별·업무별 R&R을 세부적으로 명시
 - 사고예방대책 준수 여부를 **자점감사·명령휴가 검사에 반영**
 - 이 매분기 직원 대상 사고예방대책 교육 실시 및 자기평가 의무화

다.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

1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

<u>가.</u> 현황

□ 상당수 금융사고는 **업무편의**를 위한 **직원간 비밀번호 공유** 또는 책임자 비밀번호 탈취로 상호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데 기인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①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·확대
 -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(신분증, 모바일 OTP 등)이나 생체인식 인증(지문, 홍채, 안면인식 등)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*으로 고도화
 - * 예산 등 감안하여 중요시스템부터 단계적('23년~'24년)으로 추진
- ②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 강화
 - 사고예방대책에 시스템 인증 기기 관리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

2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

가 현황

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**공동자금**에 대한 **채권단**의 검증 절차가 미비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 상존 (우리은행 사례)

- 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**채권단 공동자금**에 대하여 채권단이 **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**하는 절차 마련
 - (정기보고)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
 발급 등을 통하여 입출금,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
 - (집행내역 제공)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공

3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

가. 현황

- □ 자금인출 시 거쳐야 하는 **기안-직인날인-지급시스템이 상호 연계** 되어 있지 않아* 거래 실재성 확인이 곤란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
 - * 직전 단계 결재 부재, 주요 핵심 내용 불일치에도 통제되지 않고 다음 단계 진행 등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□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 의무화
 -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*하여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 운영
 - * (예) ①직인날인 시 기안문서 결재내용 검증, ②자금지급 시 직인날인 승인정보 검증 등

4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

가. 현황

- □ 수기 기안문서, 외부 수신문서에 대한 전산통제가 미흡*하고 업무 활용 시 검증체계도 미비하여 범죄행위에 악용 가능성 상존
 - * (수기 기안) 수기로 문서대장 작성, 문서의 전자등록과 상관없이 수기로 문서번호 부여 가능 등 (외부 수신) 수신 경로가 다양하고 통제하기 어려워 모든 수신문서의 전자등록, 검증 곤란

- □ 수기 기안문서 관리체계 강화
 -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* 의무화
 - * 전자문서와 동일한 체계로 통합관리
- ② 외부 수신문서 검증 강화
 - 외부 수신문서의 중요업무 활용 시 전산등록 및 적정성 확인 의무화

라.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

1 상시감시 대상 확대 체계화

용어 시스템으로 특이 거래를 추출하여 금융 사고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

가. 현황

- □ 상당수 은행이 상시감시 대상에서 본점 업무를 제외^{*}하고 있고, 이상거래 탐지지표도 부족^{**}하여 금융사고 징후 발견에 한계
 - * 20개 은행 중 9개 은행만 본점 포함
 - ** 상당수 은행이 최근 사고 발생 관련 지표(은행명의계좌 고액거래, 대출실행 후 본인계좌 미입금 등) 부재
- □ 이상거래 탐지시 처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업무 담당자 선에서 구두지도·시정조치로 종결하는 등 실효성 미흡

- Ⅱ 상시감시 대상 확대
 - 상시감시 대상을 본점 부서의 자금·실물관리 업무까지 확대하고 주요 금융사고 관련 탐지지표*를 즉시 추가
 - * (예) 은행명의계좌 고액거래, 대출 실행 후 본인계좌 미입금 거래 등
- ②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·처리 프로세스 강화
 - **사고 위험도** 등을 고려하여 이상거래의 중요도(상·중·하) 차등화
 - 중요 이상거래의 경우 발생사실, 조치결과 등의 상급자(임원 또는 부서장) 보고 의무화
 - * (예) 이상거래의 사고 위험도가 높고 고의·중과실이 있는 경우 임원에게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의무화
- ③ 상시감시시스템 정기 점검 의무화
 - **상시감시시스템의 적정성에** 대한 **정기 점검^{*} 절차** 마련
 - * 정기적으로 금융사고 발생현황,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가능성 및 항목별 위규사항 적발·조치율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보완

2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

용어 부점별 제반업무에 대한 절차·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제도

가. 현황

- □ 영업점 자점감사에 대한 **적정성 점검이 준법감시부서의 핵심업무**임 에도 **통제활동**이 **형식적***
 - * 20개 은행 중 6개 은행은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, 나머지 은행도 실시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
- □ 자점감사 결과의 **시스템 입력 부실·누락**이 **빈번**하고 **입력 내용**도 **표준화**되어 있지 **않아** 준법감시부의 점검 실효성 저하
 - 자점감사 결과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치·제도개선*도 미흡
 - * '21년중 자점감사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부실 부점·직원(지연, 미실시 등 포함)에게 조치를 실시한 은행은 20개 은행 중 5개에 불과

나. 주요 개선방안

- □ 영업점 자점감사 점검 의무화
 - 영업점 자점감사 결과에 대한 **준법감시부**의 **적정성 점검 의무화**
- ② 자점감사 적정성 점검업무 효율화
 - 자점감사 결과 **입력 체계를 정비***하고, **입력 내용의 실효성 제고**
 - * 점검항목별 점검방법, 증빙방법, 적정여부 판단기준 마련
 - 자점감사 부실실시 부점에 대한 불이익 조치(KPI 등) 부과 및 현장 점검(필요시) 절차 마련

② 자점감사 결과 활용체계 마련

- 자점감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상 취약점에 대하여는
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절차* 운영
 - * (준법감시부) 내부통제상 미비점 소관부서 전달→ (소관부서) 재발방지대책 마련 → (준법감시부) 미비점 및 개선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

Ⅲ. 향후 계획

가 은행권 내규 개정

- □ 은행연합회는 동 혁신방안을 금년말까지 모범규준*에 반영하고,
 - * (신설) 「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모범규준」, 「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」 (개정) 「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」, 「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지침」
 -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*을 거쳐 '23.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하여 '23.4.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 - * 준법·감사·인사·전산 등 관련부서가 다수이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 준비기간 부여

나 이행여부 점검 및 지도

- □ 금감원은 '23.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(전산 구축 등)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,
 - 향후 정기·수시검사,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 하고,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다 | 금융사고·내부통제 감독 강화

- □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·상시감독 강화방안*을 마련 (11.1일 시행)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,
 - * **①거액**(사고금액 10억원 이상) **금융사고** 시 **직접점검**(조사출장, 검사 등) 실시, **②금융사고 동향** 분석 및 **적시 지도** 강화, **③**준법·감사부서 대상 **내부통제 워크숍 확대(**연 1회→ 2회) 등
 - **법규 개정** 등이 **필요**한 과제^{*}에 대해서도 **금융위**와 **협의**하여 **차질 없이 추진**할 계획입니다.
 - *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 확대 등
- □ 금감원은 금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 주요 내용

 구 분	주요 내용				
가.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					
1.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·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	①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.8% 이상 & 15명 이상(대형은행 기준) 확보 ②부서 내 전문인력 20% 이상(주요 6개 분야 포함 필수) 확보 ※ '27년말(인력비율), '25년말(전문성 제고)까지 단계적 추진				
2.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	①선임 시 자격요건에 관련업무 (준법:감사법무 등) 경력 추가 ※ '25.1.1일 이후 선임 시부터 시행				
3.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	①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% 이하로 관리 (현재 시중은행은 11.4% 수준) ②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- 장기근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임원으로 상향 - 장기근무 승인요건으로 1)불가피성, 2)사고위험 통제 가능성(채무·투자현황 확인 등) 심사 의무화 ※ '25년말(관리비율)까지 이행				
나.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					
1. 명령휴가 제도	① 명령휴가 대상 본지점 고위험 직무 확대, 장기근무자 포함 ②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(일반 휴가 등 대체 불가) ※ '23.6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				
2. 직무분리 제도	① 작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·구체화 ② 작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※ '23.6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				
3. 내부고발자 제도	①내부고발 익명성 강화 (내규상 실명신고 문구 삭제) ②고발유형별 보상기준 다양화 ③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				
4.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	①지점 이외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②사고예방대책의 직무별·직급별 역할과 책임 (R&R) 구체화 ③ 자점감사·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 ※ '23.7.1일(직무분석 필요)부터 시행				
다.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					
1.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	① 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·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·확대 ※ '23.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				
2.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3.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	①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 ①기안→날인→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②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(금액, 결제번호, 수신인 등) ※ '23.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				
4.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	①수기 기안문서 전산 등록·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 ②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 ※ '23.7.1일(전산구축 필요)부터 시행				
라.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					
1. 상시감시 대상 확대·체계화	①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, 중요 이상지표 보고 ·처리·사후관리 체계 강화				
2.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	①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,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				